

제 호

교육대행기관지정서

○ 명 칭:

○ 소재지:

○ 대표자:

○ 지정요건: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·단체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행정안전부장관

직인